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통합(원스톱) 자동 시스템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1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 설치기준) (생략) <u><신 설></u>	제2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 설치기준)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주 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 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u>